

갈팡질팡 환경부의 1회용 봉투 사용규제

1회용품 사용을 놓고 환경부의 정책집행 과정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을 보는 듯해서 조마조마하다.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변하는 것을 조석변(朝夕變)이라고 했던가. 한 나라의 환경 정책을 집행한다는 중앙부처인 환경부가 꼭 이와 같으니 도대체 그 정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업계의 깊은 시름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규제개혁위원회가 최근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안을 최종 의결함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2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정작 개정안만 발표됐지 10평 이상 도소매유통업외에는 세부적인 규제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 향후 일선 행정관서인 각 시군구청에서의 1회용품 단속이 곳곳에서 혼란을 야기시킬 것은 뻔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시행에 나섬으로써 결국 밀어부치기식 탁상행정이 다시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다.

지난 1월 29일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매장 면적이 10평 이상 되는 도소매업 매장들은 앞으로 1회용 봉투와 쇼핑백 등의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이를 어겨 종전과 같이 무상 제공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제과점 역시 대상업종으로 분류, 개정안 시행 초기 자영제과점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두 무상제공이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환경부는 3월 23일 제과점에 대한 규제 내용을 번복해 자영제과점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1회용 봉투 사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하고 본지 취재기자를 통해 "이같은 혼선은 규제 대상을 대형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등의 도소매업이

라는 포괄적인 기준만 설정했을 뿐 구체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규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관련부서의 유권해석을 통해 제과점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법상 도소매업이 아닌 즉석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1회용 봉투 사용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곳 저곳에서 단속공무원과 제과점들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단속에 나선 공무원들조차 중앙부처의 세부지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단속부터 나섬으로써 더욱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환경부의 '자영제과점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과는 달리 개정안을 자의해석하여 제과점도 단속대상으로 분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금지를 요청하거나 이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엄포 아닌 엄포로 일관하기 시작했다.

대한제과협회는 이와 관련 환경부에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다시 발송, 지난 4월 23일 답변을 받았으나 이 서면답변에서는 자영제과점의 경우 1회용 봉투 규제대상이 아니나 사용자제 즉, 제공시는 유상판매함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애매모호한 문구로 일선 행정관서에서의 혼란을 부채질하는가 하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았을 지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매업에 해당되므로 1회용 봉투·쇼핑백 규제대상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밝힌 것이다. 참 어처구니 없고도 기가 막힐 노릇이다. 조석변하는 환경부의 정책시행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6]